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규정 번호	4-1-16
제정 일자	2001. 3. 1.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산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2.10., 2019.11.14.개정>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2014.2.10., 2019.11.14.개정>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20., 2021.8.20., 2023.3.30., 2024.2.22., 2024.3.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019.11.14.개정>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년보장임용결정을 위한 의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의한 제척(除斥)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제척(除斥)위원수를 감(減)한 수로 한다. <2019.11.14.개정>

⑥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정년보장 대상 교원임용여부 심의는 재임기간 중의 다음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심사한다.

1. 교수(教授) 및 연구 능력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3.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능력과 자세
4.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
5. 국가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참여도

제6조(심사자료) 정년보장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 (별첨1)에 의거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별지 제1호 서식)

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다. 연구실적을 심사조서 200%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2019.11.14.개정>

제7조(정년보장임용대상)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수
2.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 대상 교수

3. 신규채용시의 임용기간(3년)이 만료되는 교수

제8조(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定數)는 법정 전임교원의 12% 이내로 한다. <2018.3.30.개정>

제9조(정년보장임용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직권 면직 해당자
 3.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평정 표(별지 제1호 서식)의 평정결과에 “부”가 있는 자
- <2019.11.14.개정>

제10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년 3월 1일 이전 재임용대상자는 연구실적률 100%로 한다.(종전 인사규정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2004년 10월 1일 승진대상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2조(위원회 구성)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기준

평정영역	평정항목
1. 교수 및 연구능력	(1) 교수기술 및 강의충실도
	(2) 전공분야의 연구능력(외국어 등)
	(3) 수업효과(학생반응 등)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습활동	(1) 연구실적(양 및 질)
	(2) 국내 외 학술활동 실적
	(3) 산학협동 실적 및 연구실적
3.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1)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2)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3)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4.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	(1) 인격과 품위
	(2) 교직원간의 인간관계
	(3)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5. 국가 및 학교발전 참여도	(1)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2)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3) 학내행사 및 업무 협조도

(별지 제1호 서식)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 평정표

평정자 : (인)

인적사항	소속학과	직명	평정점		
	성명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점			
		가	부	비고	
1. 교수 및 연구능력	(1) 교수기술 및 강의충실도				
	(2) 전공분야의 연구능력(외국어등)				
	(3) 수업효과(학생반응)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	(1) 연구실적(양 및 질)				
	(2) 국내 외 학술활동 실적				
	(3) 산학협동 실적 및 연수실적				
3.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1)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2)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3) 학생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4.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	(1) 인격과 품위				
	(2) 교직원간 인화관계				
	(3) 준법정신				
5. 국가발전 및 학교발전 참여도	(1)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2)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3) 학내행사 및 업무 협조도				
평정결과(가,부)					
종합의견					